

##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(안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1998년 10월 23일  
제 안 자 : 조명호 의원외 3인

 제안이유

본 조례안은 이천시의 문화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, 이천시의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 시켜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임.

 주요골자

- 가. 이천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이익금 및 기타 수입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한다.(안 제2조)
- 나. 조성된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고 출연금과 이익금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함.(안 제3조)
- 다. 기금중 시의 출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으며 매회 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기금운용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.(안 제4조 및 안 제11조, 안 제13조)
- 라.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 심의회를 구성하도록 함.(안 제6조)
- 마.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, 기금운용관은 문화공보실장, 기금출납원은 문화예술 담당주사로 함.(안 제12조)

## 이천시문화예술발전기금등에관한조례

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이천시 문화예술발전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금의 조성) ① 육성기금의 조성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영에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한다.

② 육성기금의 조성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.

③ 육성기금의 조성금액은 5억원으로 한다.

제3조 (기금의 관리) ① 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.

② 기금은 시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.

제4조 (기금의 운용 등) ① 시의 출연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다.

②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은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문화예술 단체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 지원한다.

1. 지역고유문화의 계발·보급·보존·전승 및 선양
2. 향토사의 조사·연구 및 사료의 수집·보존
3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
4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보존 및 보급
5.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
6.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
7.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8. 기타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제5조 (사업비의 보조) ①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하는 이익금이 사업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 분을 보조하여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문화예술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보조를 받는 경우 보조금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보조금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6조 (기금운용심의회) ① 기금 및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(이하 "심의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.

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은 문화공보실장과 지방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문화원장이 추천하는 5인, 시장이 추천하는 6인, 이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한다.

⑤ 이천시소속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.

⑥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주사로 한다.

제7조 (심의회의 기능) 심의회는 기금 및 보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, 조정한다.

1.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
2.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
3. 보조금지원사업에 관한 사항
4.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

제8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 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당연직이 아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
제10조 (심의회의 운영)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 계획안과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 (기금의 운용계획) ① 시장은 매회계연도개시전에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
(제27회 - 1차 내무위원회)

2.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
3.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
4. 기타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 (회계공무원)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.

1. 기금운용관 : 문화공보실장
2. 기금출납원 : 문화예술담당주사

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중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.

제13조 (기금의 결산)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
2. 대차대조표 및 손익 계산서 등의 재무제표
3. 현금 및 지출결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

③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4조 (관계규정의 준용 등) ①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5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계현금의 수입·지출의 절차 및 출납·보관,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·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.

제15조 (수당 등) 심의회위원중 시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에 참석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